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에 있어서

서진혜

를 청구인으로

대한민국 정부

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

2018년 8월 13일

목 차

1.	서 론.....	3
2.	피청구인 정보.....	3
3.	중재절차에 대한 답변.....	4
4.	이 사건 분쟁의 사실관계.....	6
5.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9
6.	권리유보사항.....	9

1. 서론

가. 대한민국 정부(이하 “**피청구인**”)는 서진혜(이하 “**청구인**”)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및 2013년 채택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18. 7. 12. 제출한 중재통보(이하 “**통보**”)에 대하여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¹

나. **피청구인**은, 달리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보**에 기재된 각각의 문단 내용을 전부 부인합니다.

2. 피청구인 정보

가. 피청구인

이 사건 중재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로, **피청구인**의 대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 :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¹ 청구인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기로 하고 2013년 버전의 규칙을 이 사건 중재의 적용 규칙으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제11절 중 일부 조항들은 1976년 채택된 UNCITRAL 중재규칙의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한-미 FTA 제11.20조 제6항 다호에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제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이라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2013년 UNCITRAL 중재규칙에서 청구서면에 관한 조항은 제20조).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청구인**은, 한-미 FTA 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2013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데 이의 없습니다. 다만,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피청구인**은 오로지 이 사건 중재를 위해서만 2013년 UNCITRAL 중재규칙의 적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며, 이는 기타 다른 절차에서 **피청구인**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2013년 UNCITRAL 중재규칙은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규칙”(이 사건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새롭게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는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과 동일합니다.

나. 소송대리인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대한민국 법무법인(유) 화우이며, 대표 연락처는 아래와 같고, 본 중재와 관련된 모든 서신, 통지, 기타 서류는 아래 주소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 성 명 : 이성범 (파트너 변호사)
- 주 소 :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층 (06164)
- 전 화 : +82-2-6182-8527
- 팩 스 : +82-2-6003-7031
- 이메일 : sblee@yoonyang.com

3. 중재절차에 대한 답변

가. 중재인의 수

청구인은 통보에서 홍콩 변호사 Benny Lo를 이 사건 중재의 단독 중재인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될 것을 제안합니다. 피청구인은 중재인으로서 다수의 투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실무가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자 중재인 1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이 될 세 번째 중재인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

나. 중재인 선정 권한

청구인은 홍콩국제중재센터(이하 “HKIAC”)를 중재인 선정권자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 제11.19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하 “ICSID”)의 사무총장이 한-미 FTA 제11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중재인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중재에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 중재기관

청구인은 HKIAC를 이 사건 중재를 위한 행정적 사무 처리기관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상설중재재판소(이하 “PCA”)를 이 사건 중재를 위한 행정적 사무 처리기관으로 제안합니다.

라. 중재지

UNCITRAL 중재규칙 제3조 제3항 제(g)호에 반하여, 청구인은 통보에서 중재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제안합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물리적 장소를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마. 중재 언어

한-미 FTA 제11.20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공식 중재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통보의 영문본만 제출하고 한글본은 제출하지 않아 한-미 FTA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미 FTA상 의무를 위반하여 제출한 통보의 유효성을 다툴 권리를 유보합니다.

4. 이 사건 분쟁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미 FTA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이유 없으며, 단순히 오해나 왜곡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분쟁을 둘러싼 배경 및 사실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합니다.

- (1) 청구인은 2001. 4. 4. 대한민국 서울시 *** ** *-** 대지 187.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87분의 76.14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3층 주택과 단층 주택(이하 각 부동산을 “3층 주택”, “단층 주택”이라 함. 이하 이 사건 토지, 3층 주택, 단층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각 1채를 매수하는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2001. 6. 8. 관할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이 사건 토지의 경우 해당 지분 부분)를 마침으로써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01. 8. 17.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87분의 10.86 지분을 매수하고, 2001. 8. 23.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2003. 10. 23. 남편인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약 25% 지분과 단층 주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될 당시 청구인과 ***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한편, 청구인은 3층 주택을, ***는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2) 한편, 청구인은 2013. 5. 23.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던 당시는 물론, 그 소유권을 상실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2007. 12. 27.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대흥 제2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이러한 행위는 지정 구역 내 거주민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재개발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4) 2008. 2. 12. 청구인과 *** 명의의 대흥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² (이하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 및 기타 모든 관련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 5. 16. 재개발조합의 설립이 인가되었고, 2012. 1. 19. 사업시행인가가, 2015. 3. 1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각 완료되었습니다.³

- (5) 재개발조합이 2015. 3. 9. 이해관계인들에게 각자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계획 안내를 공고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지정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재개발조합,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각자 법에 따라 인증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3개 감정평가사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대상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6) 관련 법에 따르면, 3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각 부동산의 가치가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약 5억 5,000만 원(이 사건 토지 약 5억 2천만 원, 3층 주택 약 2천 900만 원)을, ***에게 약 1억 9,500만 원(이 사건 토지 약 1억 7,500만 원, 단층 주택 약 2,000만 원)을 보상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과 ***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7) 재개발조합은 2015. 10. 28.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가격에 관한 결정을 구하는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는 2016. 1. 29.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적정 보상액은 약 6억 800만 원(이 사건 토지 약 5억 3,600만 원, 3층 주택 약 7,200만 원)이고, ***에 대한 적정 보상액은 약 2억 100만 원(이 사건 토지 약 1억 8,000만 원, 단층 주택 약 2,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위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청구인과 ***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과 ***는 그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 (8) 결국 재개발조합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청구인과 ***에 대한 보상액으로 결정한 위 금액을 법원에 각 공탁하고, 2016. 3. 18. 이 사건

²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국가기관 내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님

³ 재개발조합 설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결국 재개발조합 설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21304 판결).

부동산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였습니다.

- (9) 또한, 재개발조합은 청구인과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1.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인용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그의 보조자는 2016.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2016. 1. 1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집행장소에서 청구인을 만나 가처분 결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가처분집행의 요지 등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처분 결정이 적법하게 집행되던 당시 그 현장에는 2명의 증인과 재개발조합 측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 (10) 청구인은 2016. 5.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19. 수용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개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보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6억 4,100만 원(이 사건 토지 약 5억 6,900만 원, 3층 주택 약 7,200만 원)을, ***에 대하여는 2억 1,200만 원(이 사건 토지 약 1억 9,100만 원, 단층 주택 약 2,100 만 원)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11) 이후 재개발조합은 2015. 12. 9. 청구인 및 ***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1. 11. 재개발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7. 3. 2.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청구인 및 ***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246301 판결).
- (12)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용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5.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통보에서 한 주장을 전부 부인하며, 신청취지 또한 전부 부인합니다.
- 나. 피청구인은 중재판정부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 (1) 이 사건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고(혹은 없거나), 청구인이 본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2) 청구인의 모든 신청취지를 기각한다
 -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변호사 비용, 중재인 및 이 사건 중재의 행정처리기관에 대한 보수 및 비용, 기타 본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을 모두 지급한다
 - (4) 그 외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 수단의 제공을 명한다

6. 권리유보사항

피청구인은 분명히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유보하며, 이는 (a) 신속처리 또는 기타 절차를 위한 본안전 항변을 주장하고, (b) 당해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 내용(신청취지, 관할, 보안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을 변경, 보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서명/ 

이성범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대한민국 정부 대리인